조 문

1.

2. (,)

	, [] 4 () 5	•
. Г		١	3 1	가	
	,	,			
36 () 36		14 .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3.					
' .					
1) 2)					
3)					
4)					
가)	•			· ,	
			,		
)					
)				<u> </u> . , • 가	
))				•	
, ,					
)					

- (1) 2.1 공포
- (2)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② 당연히 2.1일이 시행일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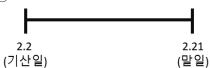
제7조(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 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 (1) 2.1 공포
- (2)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편저자 주 ; 20일이 지난 날부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2.2일이 기산일. 2.21일이 말일. (20일 째임)

3



- ④ 2.22일이 되면 20일이 경과한 날이 됨. 따라서 그 날부터 시행됨.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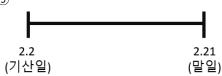
제7조(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 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 ① 2.1 공포
- ②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 ④ 2.21(말일)로 20일의 기간은 만료함.
- ⑤ 2.21(말일)이 토요일이면 일요일인 2.22일이 2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므로 일요일부터 법은 시행됨.
- ⑥ 따라서 2.21(말일)이 토요일이라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함.

(7)

제7조(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 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 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2023 1011

: 00

: OO : 000000 -0000000

: 0

: 000 - 0000 - 0000

•

...

2023. 10. 11.

00

1()

: 가

: 00

: 0

:

2023. 2. 1. 가

.

...

2023. 4. 1.

00

: 가

: 00

: 0

:

가

2023. 2. 1.

2023. 4. 1.

0 0

4.			
:	00	0	
	:	2023. 2. 1.	가
	:		
		0 0	

(1)

```
75
.
95
```

(2)

[]	[]	[]
제36조(시설기준) ①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37 1 가 가 가 1. 21 6 가 2. 21 8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36 14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가. 1) 2) 3) 4) 가) ——·································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지52조(허가취소 등) ① 1. 75 가	89 () 71 , 72 ,

	14 []	11	가
			•
1.	가 85		• ()
	11 【 가】	1	가 가
	·		
7	<u>34</u> , 35	43	<u>가</u> ・

- (1) 법령에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시장이 甲에 대해 밤 12시 30분에 음식점에서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함.
- (2) ① 식품위생법 제70조 :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령 제1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밤 12시 넘어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 6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甲 -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령 제10조를 취소하라(취소소송)

③ 시장 - 甲

4월 1일 - 6개월 영업정지처분(1월 10일 12 : 30 A 주류 판매)

甲 - 시장 6개월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 (1) 지방세법 제110조 :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990년 2월 1일 제정)
-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991년 2월 1일 제정)
- (3) 지방세법 제110조 :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장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92년 2월 1일 개정)

-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u>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u>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u>총리가 정하는</u>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u>총리가 고시하는</u>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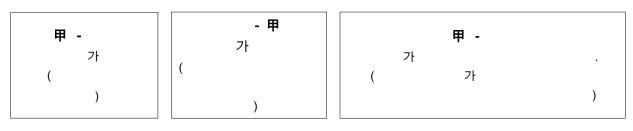
/	
가 가	5 () ,
) (•) •
가 가	
가 78	3 ()

2.

	11 (가)	1	가	가	
7.	32 ,		43	가・		

3.

```
25 ( 가 ) 가 가
가 .
```



(1)

(2)

Z - (

- Z ()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 적법성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민사법원은 행정행위, 즉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임).

2.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심사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1)

동작세무서장 - 甲	甲(-1000) 국가(+1000)	甲 - 국가
2.1	2.10	4.10
1000만원의 상속세부과처분	납부	1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3.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이득의 법률상 원인(다른말로하면 근거)이 없어야 함. 2번 사안에서는 1000만원의 <u>세금부과처분</u>이 甲이 납부하게 된 <u>원인</u>이며, 국가가 1000만원을 가질 수 있는 <u>법률상 근거</u>가 됨. 만약 2.1일자 <u>세금부과처분</u>이 **당연무효**라면 애초부터 甲이 납부할 <u>법률상 근</u> 거도 없고 국가도 1000만원을 가질 수 있는 <u>근거도 없으므로 국가의 이득은 부당이득이 됨</u>.

4.

그러나 1000만원의 세금부과처분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칠 때**에는 <u>취소 전</u>까지는 1000만원 세금부과처분은 <u>유효(살아있음)</u>하므로 甲은 1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가 1000만원을 납부받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은 <u>근거있는(1000만원 세금부과처분으로 인한)이득</u>이 되므로 <u>부당이득이 되지 않음.</u>

한편 4의 경우 甲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러한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함. 민사법원은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민사법원 스스로가 공정력으로 인해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다른 말로하면 세금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국가의 이득은 <u>원인 있는 이득(</u>세금부과처분으로인한)에 해당하므로 <u>부당이득이 아니며</u>, 甲은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구제받을 수 없음.

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X) 2019 지방적 · 교육행정적 9급

②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O,X) 2019 서울시 9급 ③ 국민이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당해 민사법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직접 상실시켜 납부된 세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O,X)

2019 경행경채 2차

- ④ 조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민사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O,X) 2017 사회복지직 9급
- ⑤ 과 · 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O,X) 2019 국가적 9급
- ⑥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u>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u>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O,X) 2021 지방지·서울시 9급
- 5.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심사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2)

동작구청장 - 乙

2.1

1년의 영업정지처분 (1.10 A에게 주류판매) 乙 - 동작구

4.10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6.

국민이 행정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용이 <u>위법</u>하기만 하면 되고 그 작용이 <u>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u>공무원의 작용이 취소될 필요는 없음-공무원의 폭행이 있은 후 폭행을 취소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것).

7.

Z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함. 그런데 <u>민사법원</u>은 행정행위, 즉 <u>처분이 위법한지</u> 아닌지는 심사할 수 있음(위법,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임).

8.

즉, Z이 제기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은 심사할 수 있으므로 만약 동작구청장의 2.1일자 영업정지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면 동작구는 Z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음.

- ①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O,X) 2020 국회직 8급
- ②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O,X) 2019 국가직 9급
- ③ 위법한 철거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그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2012 국가직 9급
- ④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X) 2020 지방적 가성을 가장 기급

<u>형사법원</u>은 행정행위의 <u>위법, 적법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음</u>.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형사법원은 행정행위, 즉 처분이 <u>무효가 아니라면</u> 그 행위의 <u>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u>(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임).

10.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1)

먼저 허가나 면허를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무면허~~죄**에 해당될 수 있음.

도로교통법 152조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사기 등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였더라 도 이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임.

- (1) 甲면허취득(취득과정에서 17세임에도 18세라고 연령을 속인 사기 존재)
- (2) 5.1교통사고 발생. 그런데 사고 이후 수사기관이 甲이 나이를 속인 사실을 알고 면허를 직권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152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3) 검찰이 공소를 제기함

12.

형사법원

검찰-甲

형사법원은 재판진행 중에 甲의 면허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공정력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따라서 甲의 5.1자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甲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음.

- 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O,X) 2014 지방직 9급
- ②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력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X) 2022 국가직 9급
- ③ 하자 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하여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당해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X) 2016 지방직 7급
- 13.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2)

국민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상대방인 국민이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이른바 <u>시</u>정명령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음.

도시계획법92조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역 등의 형벌이 선고되면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됨. 그런데 행정청의 시정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즉 <u>위법</u>이라면 잘못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따라서 <u>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u>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함.

한편 형사법원은 행정행위, 즉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u>위법성</u>은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시정명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여 <u>시정명령이 위법</u>하다면 시정명령위반죄로 공소제기된 <u>피고인에게 무죄판결</u>을, <u>시정</u> 명령이 적법하다면 시정명령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게 됨.

- ① 어떤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때문에 그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시정명령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O,X) 2021 군무원 7급
- ② 구 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O,X) 2022 국가직 9급
- ③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X) 2019 경행경제 2차
- ④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O,X) 2022 소방간부

동작세무서장 - 甲 2.1

1억 세금 부과 甲이 납부하지 않음. 동작세무서장이 甲을 검찰에 고발 형사법원 검찰 - 甲 8.1.

조세포탈죄 유죄 확정

행정법원 甲 - 동작세무서장 9.1

취소판결확정

재심이란 비록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 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 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①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O,X) 2022 국가적 9급

<OX 정답>

4.① O ② X ③ X ④ O ⑤ O 8.① O ② O ③ O ④ O 12.① O ② O ③ O 14.1) 0 2 0 3 0 4 0

15.1) 0

2000. 2. 1.	2001. 4. 1.	서울행정법원	11. 1.
부유세법 제정	동작세무서장이	5. 1.	헌법재판소가
부유세법 제10조	부유세법 제10조에	甲 - 동작세무서장	부유세 법률에 대한
세무서장은 소득이	따라 甲에게 10억의	취소소송	위헌결정을 함.
5억 이상인 사람에	세금부과	부유세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조항에 위반됨.	
대해 소득의 70%에		따라서 세금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함.	
해당하는 세금을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부과한다.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2

2000. 2. 1.	7. 1.	8. 1.	10. 1.	11. 1.	12. 1.
부유세법 제정	동작세무서장-乙	乙-동작세무서장	동작세무서장-丙	헌법재판소가	丙-동작세무서장
	10억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10억 세금부과처분	부유세 법률에 대한	취소소송
				위헌결정을 함.	

3.

2000. 2. 1.	2001. 5. 1.	11. 1.
부유세법 제정	동작세무서장-丁	헌법재판소가 부유세 법률에
	(丁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대한 위헌결정을 함.
	있는 상태임)	
	10억 세금부과처분	

4.

2000. 2. 1.	11. 1.	12. 1.	
부유세법 제정 헌법재판소가		동작세무서장-戊	
	부유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함.	부유세 법률에 따라 10억 세금부과 처분	

2000. 2. 1.	2001. 4. 1.	11. 1.	12. 1.
부유세법 제정	동작세무서장이	헌법재판소가	동작세무서장이
	부유세법 제10조에 따라	부유세 법률에 대한	甲의 재산에 대해
	甲에게 10억의 세금부과처분	위헌결정을 함.	압류처분을 행함.

- 6. 甲은 부유세법 제10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7. 헌법재판소가 행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甲에 대해 소급효를 가지는가?
- 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丁에게도 있는가?
- 9. (1의 사례에서) 甲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은 무효인가?
- 10. 戊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은 무효인가?
- 11. (5의 사례에서) 甲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처분)은 무효인가?

12. 강제집행절차 중 대집행절차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대집행한다는 뜻을 알리는 것)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통보하는 것)

13. 강제집행절차 중 강제징수절차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14.

 2. 1.
 4. 1.
 6. 1.
 8. 1.

 건물철거명령
 계고
 통지
 통지처분취소소송

(계고처분은 위법, (통지처분 자체에는 (당연히 통지처분이 그러나 당연무효는 아님)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음)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여야 함)

15. 이 경우 계고처분의 위법성이 통지처분에 이어지는 것(승계)을 이른바 하자의 승계라고 함. 즉 계고처분이 위법하므로 통지처분 그 자체에 주체, 내용, 형식, 절차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계고처분의 후속 처분인 통지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는 것을 하자의 승계라고 함.

```
1.
甲
    Γ
                                                      )
                                      ) ل
                                                                              Α
                                                      甲
                                 ? (
                                                            ) 2022
      ]
       42
                        1
                                                      가
                                  ]
                                                                              가
   43
                                         42
       ]
                                       43
                                             1
   55
                       500
  甲
                   甲
                   甲
       甲
  甲
                                                                        ,甲
  甲
                                         Α
                                                 甲
<
                                              가
   ×
 가
                     Γ
                                                           38
                                                                 2
                                                                           2017. 6.
 15, 2014 46843).
```

× 20

3 [가 가 _____ 가 가 가 가 가 2017. 6. 15, 2014 46843). 甲 × 2006. 2. 10, 2003 5686). × 26 甲 20 1 • 3 • 4 1993. 11. 23, 93 16833).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이)란 행정법규의 위반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이득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과징금납부의무는 () 의무가 아니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 (된다 / 되지 않는다).

▶일신전속적 / 된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고 /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없다).

▶요하지 아니하나 / 없다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된 것으로 이를 두고 국가형벌권행사로서의 처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없다).

▶없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 /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2. ()(이)란 의무위반행위가 그 사업의 인·허가 등의 철회·정지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사업(대중교통 등)인 경우 사업 자체는 존속시키면서도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제재금이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에 속한다.

▶재량

3. ()(이)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등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 자실은 고려(된다 /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는 것이고 /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이(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되지 않는 것이고 / 정당한 사유

4. ()(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은 (는) 제외한다.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으)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이(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법령상 책임자 / 고의나 과실

5. ()(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강제수단을 말한다.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볼 수 없다).

▶보아야 한다

6. ()(이)란 행정법령의 위반행위로 초래된 위법상태의 제거 내지 시정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없다).

행정청은 시정명령으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 없다).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

1. ()(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 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상의 의무이며 건축도급계약상의 의무와 같은 ()상의 의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법(公法) / 사법(私法)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 및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명 <u></u>	도 / 퇴거

2. ()(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그 ( )을(를) 달리하므로 양자는 병과될 수 (있다 / 없다).

▶목적 / 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 )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 )하여야 한다.

▶반복 / 징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 )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재판절차가 개시
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 재판절차는 ( )된다.
```

3. ()(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에 해당한다. ▶직접강제

4. ()(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상 즉시강제

()(이)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행정상 (강제집행 / 즉시강제)은(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침 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므로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 / 즉시강제)을(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강제집행 / 즉시강제)은(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시강제 / 강제집행 / 즉시강제

행정벌

1. ()(이)란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벌(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은(는) 형법상의 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과벌절차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의한다.

▶행정형벌 / 형사소송
()(이)란 일정한 행정범 등에 대해 정식재판에 대신하여 절차의 간이ㆍ신속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을 통고하는 준사법적 행위를 말한다.

▶통고처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이 아니다).

▶이 아니다

2. ()(이)란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벌이 아닌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원칙이므로 ()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나, ()인 과태료 부과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 없다).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가)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본래적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의 위반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이득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과징금납부의무는 (<mark>일신전속적</mark>) 의무가 아니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되지 않는다).

▶일신전속적 / 된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고 /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없다).

▶요하지 아니하나 / 없다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된 것으로 이를 두고 국가형벌권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없다).

▶없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 /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2. (변형적 과징금)(이)란 의무위반행위가 그 사업의 인·허가 등의 철회·정지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사업(대중교통 등)인 경우 사업 자체는 존속시키면서도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제재금이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재량

3. (가산세)(이)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등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 자실은 고려(된다 /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는 것이고 /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이(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되지 않는 것이고 / 정당한 사유

4. (제재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강제)은 (는) 제외한다.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mark>법령상 책임자</mark>)(으)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가) 없더라도 부과할수 있다.

▶법령상 책임자 / 고의나 과실

5. (공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강제수단을 말한다.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볼 수 없다).

▶보아야 한다

6. (시정명령)(이)란 행정법령의 위반행위로 초래된 위법상태의 제거 내지 시정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없다).

행정청은 시정명령으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 없다).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대집행)(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 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mark>공법(公法)</mark>)상의 의무이며 건축도급계약상의 의무와 같은 (사법(私法))상의 의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법(公法) / 사법(私法)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mark>민사소송</mark>)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명도) 및 (퇴거)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명도 / 퇴거

2.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그 (목적)을(를) 달리하므로 양자는 병과될 수 (있다 / 없다).

▶목적 / 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반복 / 징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 재판절차는 (종료)된다.

▶일신전속적 / 종료

3. (직접강제)(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mark>직접강제</mark>)에 해당한다.

▶직접강제

4. (<mark>강제징수</mark>)(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 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상 즉시강제

(<mark>즉시강제</mark>)(이)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행정상 (강제집행 / 즉시강제)은(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므로 행정강제는 행정상 (<mark>강제집행</mark> / 즉시강제)을(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강제집행 / 즉시강제)은(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시강제 / 강제집행 / 즉시강제

행정벌

1. (<mark>행정형벌</mark>)(이)란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벌(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 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mark>행정형벌</mark>)은(는) 형법상의 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과벌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

▶행정형벌 / 형사소송

(<mark>통고처분</mark>)(이)란 일정한 행정범 등에 대해 정식재판에 대신하여 절차의 간이 · 신속을 목적으로 상대 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을 통고하는 준사법적 행 위를 말한다.

▶통고처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이 아니다).

▶이 아니다

2.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벌이 아닌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원칙이므로 (<mark>행정형벌</mark>)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나, (<mark>행정질서벌</mark>)인 과태료 부과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mark>행정형벌</mark> /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행정형벌 / <mark>행정질서벌</mark>)에 해당한다.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 <mark>없다</mark>).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가)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